



제417회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신용카드 등에 의한 보험료 납부〉

■ 이정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187호)

2024. 8.

정 무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신용카드 등에 의한 보험료 납부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정문의원 등 12인
2. 제 안 일 : 2024. 6. 7.
3. 회 부 일 : 2024. 6. 2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신용카드 이용의 보편화로 보험상품에 대한 카드 결제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보험회사들은 카드수수료 부담을 이유로 보험료의 신용카드 납부를 축소하거나 보장성 보험 등 특정 보험상품에만 카드 납부를 허용하고 있음.

보험업계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생명보험사의 전체 보험료 중 4% 대로 미미한 수준임.

이러한 보험회사들의 신용카드 납부 제한은 저금리 기조로 자산운용수익이 저조한 데 기인하고 있으나, 소비자의 권익을 제한하고 신용카드 이용자를 차별하는 행위라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납부 받을 때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선불카드에 의한 결제로 납부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에 의한 보험료 결제를 이유로 보험계약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보험회사에 대해 별도의 처벌 규정을 두어 소비자의 지불결제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95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신용카드 등에 의한 보험료 납부

- 개정안은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이하 “신용카드 등”이라 함)에 의한 결제로 납부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신용카드 등에 의한 보험료 결제를 이유로 보험계약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보험회사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려는 것임(안 제195조의2 및 제204조제1항제10호 신설).

현행	개정안
<u><신설></u>	제195조의2(보험료의 납부) ① 보험회사는 보험료를 현금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에 의한 결제로 납부 받을 수 있다. ② 보험회사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에 의한 보험료 결제를 이유로 보험계약자를 불리하게 대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9. (생략) <u><신설></u> ② (생략)	제204조(벌칙) ① ----- ----- ----- -----. 1. ~ 9. (현행과 같음) <u>10. 제195조의2제2항을 위반한 자</u> ② (현행과 같음)

□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은 ① 금전채무의 상환, ② 금융투자상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 ③ 사행성게임물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지급 등에 대하여 신용카드 결제를 금지¹⁾하고 있는데, 신용카드 결제금지 대상에 보험상품이 제외되어 있어 해석상 카드납부가 가능한 보험상품의 종류 등은 카드사와 보험회사가 계약으로 정하는 것이 가능함.

○ 그러나 업권별·상품별 보험료 카드결제 현황을 보면, 2024년 1분기 기준 전체 보험료 중 카드결제 비중이 생명보험사 3.8%, 손해보험사 30.5% 수준으로 높지 않은 수준임.

- 또한 보험상품별 현황을 보면, 2024년 1분기 기준 자동차보험 보험료의 카드결제율이 80.3%로 가장 높고, 장기보장성 보험(15.7%), 보장성 보험(7.0%), 장기저축성 보험(3.3%) 순으로 나타남.

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신용카드”란 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신용카드가맹점에서 다음 각 목을 제외한 사항을 결제할 수 있는 증표(證票)로서 신용카드업자(외국에서 신용카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발행한 것을 말한다.

가. 금전채무의 상환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

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사행성게임물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지급. 다만, 외국인(「해외이주법」 제2조에 따른 해외이주자를 포함한다)이 「관광진흥법」에 따라 허가받은 카지노영업소에서 외국에서 신용카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발행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은 제외한다.

라. 그 밖에 사행행위 등 건전한 국민생활을 저해하고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지급

<업권별·상품별 보험료 카드결제 현황(금액 기준)>

(단위: 억 원, %)

구분		'23.4Q			'24.1Q		
		전체 보험료(A)	카드결제 보험료(B)	비중 (B/A)	전체 보험료(C)	카드결제 보험료(D)	비중 (D/C)
생명 보험	보장성	124,343	8,694	7.0	130,610	9,116	7.0
	저축성	64,822	125	0.2	82,403	114	0.1
	변액	29,550	147	0.5	31,139	133	0.4
	전체	218,715	8,966	4.1	244,152	9,363	3.8
손해 보험	장기보장성	161,660	25,221	15.6	165,106	25,909	15.7
	장기저축성	6,579	276	4.2	5,788	193	3.3
	자동차보험	52,781	42,278	80.1	52,459	42,113	80.3
	전체	221,020	67,777	30.7	223,354	68,216	30.5

(자료: 생명보험협회 및 손해보험협회)

□ 이에 개정안은 보험회사가 신용카드 등에 의한 결제로 보험료를 납부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신용카드 등에 의한 결제를 이유로 보험계약자를 불리하게 대우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려는 것으로, 카드 납부의 범위를 확대하여 보험계약자의 결제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 다만, 신용카드 등을 통한 보험료 납부 근거의 법제화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첫째, 사적자치의 측면에서 보면, 「보험업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보험은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간의 보험계약에 따라 성립되는 사적(私的) 보험이라는 점에서 보험료 납부수단을 당사자 간 자유롭게

정하도록 하는 것이 계약자유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보임.

- 참고로, 현행법에서 보험료의 신용카드 등을 통한 납부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보험, 장기보장성보험의 경우 이미 각 보험회사가 다수의 카드사와 가맹점계약을 체결하여 신용카드 결제에 의해 보험료를 납부 받고 있는 상황임.²⁾

○ 둘째, 보험계약자의 편익 측면에서 보면, 보험료의 신용카드 납부가 확대될 경우 보험회사는 카드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의 사업비 증가를 보험료³⁾에 반영함에 따라 보험계약자의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고,

카드납부자에게 수수료를 직접 전가하지 않을 경우 전체 보험료가 인상되어 현금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보험계약자와 신용카드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보험계약자 간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있음.

○ 셋째,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동법 시행령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상품,⁴⁾ 예금, 적금 및

2) 한편, 현재 국민연금보험 및 국민건강보험은 관련 법률에서 신용카드 등에 의한 보험료 납부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데, 이는 해당 보험의 경우 「국민연금법」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가입이 강제되는 공적(公的) 보험이라는 점에서 보험료 납부와 관련하여 가입자의 선택권을 확대할 필요성이 사적 보험에 비해 크다고 할 수 있음.

3) (참고) 소비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영업보험료) = ①순보험료 + ②부가보험료

①순보험료: 보험금 지급에 충당되는 재원(피보험자의 사망, 부상 등)

②부가보험료: 보험회사가 보험계약 체결·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비의 재원(사업비)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금융투자상품) ① 이 법에서 “금융투자상품”이란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特定) 시점에 금전,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하 “금전등”이라 한다)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취득하는 권리로서, 그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전등의 총액(판매수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이 그 권리로부터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등의 총액(해지수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초과하게 될 위험(이하 “투자성”이라 한다)이 있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부금 등을 신용카드 결제금지 대상으로 규정⁵⁾하고 있는데, 보험상

1.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2. 「신탁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수익증권발행신탁이 아닌 신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탁(제103조제1항제1호의 재산을 신탁받는 경우는 제외하고 수탁자가 「신탁법」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분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는 포함한다. 이하 “관리형신탁”이라 한다)의 수익권
 - 가. 위탁자(신탁계약에 따라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는 수익자를 포함한다)의 지시에 따라서만 신탁재산의 처분이 이루어지는 신탁
 - 나.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재산에 대하여 보존행위 또는 그 신탁재산의 성질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용·개량 행위만을 하는 신탁
3. 그 밖에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상품에서 제외하더라도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

② 제1항의 금융투자상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증권
2. 파생상품
 - 가. 장내파생상품
 - 나. 장외파생상품

5)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신용카드”란 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신용카드가맹점에서 다음 각 목을 제외한 사항을 결제할 수 있는 증표(證票)로서 신용카드업자(외국에서 신용카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발행한 것을 말한다.
 - 가. 금전채무의 상환
 -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
 - 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사행성게임물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지급. 다만, 외국인(「해외이주법」 제2조에 따른 해외이주자를 포함한다)이 「관광진흥법」에 따라 허가받은 카지노영업소에서 외국에서 신용카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발행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은 제외한다.
 - 라. 그 밖에 사행행위 등 건전한 국민생활을 저해하고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지급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조의2(결제금지 대상 범위 등) ①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나목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2. 예금, 적금 및 부금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
- ② 법 제2조제3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지급”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전의 지급을 말한다.
 1. 「관광진흥법」에 따른 카지노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지급. 다만, 외국인(「해외이주법」 제2조에 따른 해외이주자를 포함한다)이 「관광진흥법」에 따라 허가받은 카지노영업소에서 외국에서 신용카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발행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은 제외한다.
 2. 「경륜·경정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륜 및 경정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지급
 3.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행행위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지급
 4.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소싸움경기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지급
 5. 「한국마사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마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지급
 6. 신용카드업자와 상품권 신용카드 거래 계약[상품권 발행자(발행자와 상품권 위탁판매계약을 맺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신용카드회원에게 신용카드를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발행자가 발행한 상

품 중 예·적금 및 금융투자상품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는 저축성보험, 변액보험⁶⁾ 등에 대해서도 신용카드 등에 의한 납부를 법제화할 경우 개정안이 「여신전문금융업법」과 모순되는 측면이 있어 입법의 체계정당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음.

□ 금융위원회는 보험료의 카드납부 여부는 보험회사와 카드사 간 계약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사적 자치의 영역이고, 개정안에 따를 경우 수수료 비용에 따라 보험계약자의 부담이 증가하거나 금융상품 간 신용카드 사용에 관한 법률 일관성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등의 부작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므로,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특정한 결제수단을 의무화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108

상품권을 제공하는 계약을 말한다. 이하 제7호에서 같다]을 체결하지 아니한 발행자가 발행한 상품권의 구입에 따른 금전의 지급

7. 개인 신용카드회원이 월 1백만원의 이용한도[선불카드 금액,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하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한다) 금액 및 상품권 금액을 합하여 산정한다]를 초과한 선불카드,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상품권(신용카드업자와 상품권 신용카드 거래 계약을 체결한 발행자가 발행한 상품권으로 한정한다)의 구입에 따른 금전의 지급

- 6) ○ 저축성보험: 목돈마련, 노후생활자금 등에 대비해주는 보험상품으로, 납입한 보험료보다 만기 시 지급되는 급부금이 더 많은 보험임.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 중 사업비와 위험보험료를 제외한 적립보험료를 일정한 이율로 적립하여 만기에 지급함
- 변액보험: 보험료 중 사업비와 위험보험료를 제외한 적립보험료를 분리해 주식·공채·채권 등 수익성이 높은 유가증권에 투자한 뒤, 운용 실적에 따라 투자 성과를 계약자에게 나누어 주는 실적 배당형 보험상품